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3425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1.

제출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정원*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으로 ‘학생’의 교육 및 놀이 외에 ‘학교 밖 청소년’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하려는 것임.

* 주제정원: 정원을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, 그 종류에는 교육정원, 치유정원 및 실습정원 등이 있음.

법률 제 호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6호가목 중 “학생들”을 “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(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) ① (생 략) ② 정원은 조성·운영 주체,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~ 5. (생 략) 6. 주제정원 가. 교육정원: <u>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</u> 나. ~ 마. (생 략) ③ (생 략)	제4조(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가. ----- <u>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(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)</u> ----- 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